

의안번호	2205352
의 퇴 인	오세희 의원
회 답 일	2025. 2. 4.
추계번호	24A4940

주얼리산업진흥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1억 8,55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7억 2,750만원(연평균 1억 4,55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	50	—	—	—	—	50	10
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(안 제6조)	5.5	5.5	5.5	5.5	5.5	27.5	5.5
실태조사(안 제13조) 및 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(안 제14조)	130	130	130	130	130	650	130
합 계	185.5	135.5	135.5	135.5	135.5	727.5	145.5

주: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. 다만,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)	○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	의무규정 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산업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둬 (제1항)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(제6항)	
3	안 제13조(실태조사)	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. 이 경우 주얼리산업 관련 해외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4	안 제14조(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의 주얼리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·가공한 통계(이하 “통계자료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5	안 제15조(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)	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6	안 제16조(창업 및 제조 지원)	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주얼리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얼리를 제조하는 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7	안 제17조(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)	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품질을 검증하고 주얼리의 제조·창작에 필요한 주얼리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에 필요한 주얼리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·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8	안 제19조(주얼리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주얼리산업 기반시설에 자금, 설비 및 기반시설 등을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
9	안 제20조(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또는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·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0	안 제21조(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)	- 정부는 주얼리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-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주얼리 관련 국제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자재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,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2항) - 정부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「관세법」에 따라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 사업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 - 정부는 주얼리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주얼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, 국제전시회 개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11	안 제24조(주얼리기업 평가의 선정 및 지원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평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2	안 제26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	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-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3	안 제27조(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)	정부는 전통 세공기술과 현대 주얼리 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주얼리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14	안 제28조(우수사례 발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활화·산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굴 및 시상)	업화 및 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—
2	안 제6조(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)	○	—
3	안 제13조(실태조사)	○	—
4	안 제14조(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)	○	—
5	안 제15조(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)	X	○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관련 재정지원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6	안 제16조(창업 및 제조 지원)	X	○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7	안 제17조(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)	X	○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8	안 제19조(주얼리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)	X	○ 주얼리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9	안 제20조(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)	X	○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·공동판매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						
			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						
10	안 제21조(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)	X	○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<table><tr><td>소관</td><td>현행 사업</td><td>2025예산</td></tr><tr><td>산업부</td><td>생활산업경쟁력강화 (소비재산업수출기반구축)</td><td>2.5억원</td></tr></table>	소관	현행 사업	2025예산	산업부	생활산업경쟁력강화 (소비재산업수출기반구축)	2.5억원
소관	현행 사업	2025예산							
산업부	생활산업경쟁력강화 (소비재산업수출기반구축)	2.5억원							
11	안 제24조(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)	X	○ 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						
12	안 제26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	X	○ 전담기관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이러한 지원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						
13	안 제27조(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)	X	○ 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의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						
14	안 제28조(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)	X	○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에 대한 지원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				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요인에 한해 유사 사업 등을 고려하여 추계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 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)을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할 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5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¹⁾
 - － 유사 연구용역 사례로는 「생활소비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」(2023년, 4,000만원), 「섬유패션산업 경쟁력 분석 및 활력제고 방안 연구」(2018년, 5,000만원) 등임

[표 2]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	50	—	—	—	—	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(안 제6조)

-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둘 경우 회의수당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안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, 회의수당 지급 대상인 민간위원 수는 과반인 11명으로 가정함(전체 위원 수는 20명으로 가정)
- 안 제6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사항²⁾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-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1회 2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550만원(11명 × 2회 × 25만원)으로 추계됨

1)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·시행하는 시행계획은 별도의 연구용역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함

2)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
2. 주얼리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[표 3]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 (안 제6조)	5.5	5.5	5.5	5.5	5.5	27.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실태조사(안 제13조) 및 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(안 제14조)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(안 제13조),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주얼리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·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경우(안 제14조)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유사 사례를 참고할 때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1억 3,000만원으로 추계됨
 - － 유사 사례로는 “2023 생활소비재산업실태조사”(한국디자인진흥원, 2023년 1억 6,000만원), “2023 생활소비재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”(산업연구원, 2023년 1억 500만원) 등임

[표 4] 주얼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실태조사(안 제13조) 및 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(안 제14조)	130	130	130	130	130	6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